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(안)

2022년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
(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) 세입·세출 예산안 공고

"The Days. With Us"

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 규정에 의거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(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)의 세입·세출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◎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(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) 예산 총괄

(단위: 천원)

세 입		세 출	
세 입 총 계	136,537	세 출 총 계	136,537
사업수입	100,000	인건비	107,553
후원금	36,537	업무추진비	3,200
		운영비	8,984
		사업비	19,000

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

예 산 총 칙

제1조 (예산의 규모)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2022년도 총 세입액은 136,537천원이며, 총 세출액은 136,537천원이다.
제2조 (예산의 내역) 세입·세출의 명세는 세입·세출예산서와 같다.

1.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(관 또는 항 단위).

1) 정부보조금	100,000 천원	2) 기타보조금	0 천원
3) 후원금	36,537 천원	4) 잡수입	0 천원
5) 이월금	0 천원		

2.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(관 또는 항 단위).

1) 인건비	107,553 천원	2) 업무추진비	3,200 천원
3) 운영비	8,984 천원	4) 사업비	19,000 천원
5) 잡지출	0 천원		

제3조 (추가경정예산)추경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.
제4조 (예비비)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의 1%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한다.
제5조 (예산의 전용) 예산의 전용에 있어 '항'간의 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, '목'간의 전용은 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할 수 있음.
제6조 (예산의 집행) 예산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년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며, 그 외 예산 총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함.
제7조 기타 필요한 사항